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811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피복 구입비 세액공제 신설(임광현의원안)	2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8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2.

(3) 회 부 일 : 2024. 10.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 4제5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피복 구입비 세액공제 신설(임광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특별세액공제 <u><신 설></u>	☐ 특별세액공제에 <u>피복세액공제</u> 추가 (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복 구입비 ○ 공제형태: <u>세액공제</u> ○ 공제율: 15% ○ 공제한도: <u>50만원</u>

* 임광현의원안 2024. 10. 22 제출(의안번호 4811)

☐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장 구입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복 구입비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비용의 15% 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려는 것임.

☐ 개정안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복비 지출을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가 지출한 피복 구입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취지로 보임.

2019년~2024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의류 및 신발 지출은 2021년 12만 6,000원, 2022년 13만 6,000원, 2023년 13만 9,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4년 2/4분기에는 15만 1,000원을 기록하는 등 의류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가구당 월평균 의류 및 신발 지출액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금액(비중)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4분기
소 비 지 출	2,457	2,400	2,495	2,640	2,792	2,813
의 류 · 신 발	138(5.6%)	118(4.9%)	126(5.0%)	136(5.2%)	139(5.0%)	151(5.4%)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 최근 의류의 가격 상승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등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하여 구입한 피복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생활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활물가상승률	0.2	0.4	3.2	6.0	3.9
의류 물가상승률	0.1	0.7	0.6	3.1	6.7

주: 생활물가상승률= {(당해년도 생활물가지수 ÷ 직전년도 생활물가지수) - 1} × 100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 조사대상품목 중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의 가격으로 작성한 물가지수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소비자물가조사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기업의 복장규정으로 인해 구입한 피복과 본인의 의사에 따

라 구입한 피복을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기업의 복장규정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득 창출을 위하여 정장 등 고가의 피복을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을 공제해주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의 구매의도를 파악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선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피복을 구입하기만 하면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입법취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둘째, 증가하는 조세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조세지출 전체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 제80조¹⁾에 따른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세감면액 규모]

(단위: 억원, %)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국세감면액(A)	570,248	635,484	697,664	714,305	780,178
국세수입총액(B)	3,639,730	4,229,237	3,703,803	3,949,465	4,122,410
국세감면율[A/(A+B)]	13.5	13.0	15.8	15.3	15.9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14.3	14.6	14.3	14.6	15.2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1)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문 의 처
02)6788-5154